

2026년도 나노반도체 연구성과 실용화 지원사업 [혁신기업 양산시제품 개발지원] 신규과제 공고

나노반도체 연구성과 실용화 지원사업의 2026년도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직원 및 나노기업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
2025년 10월 28일
나노종합기술원장 박 홍 수

1. 대상과제 개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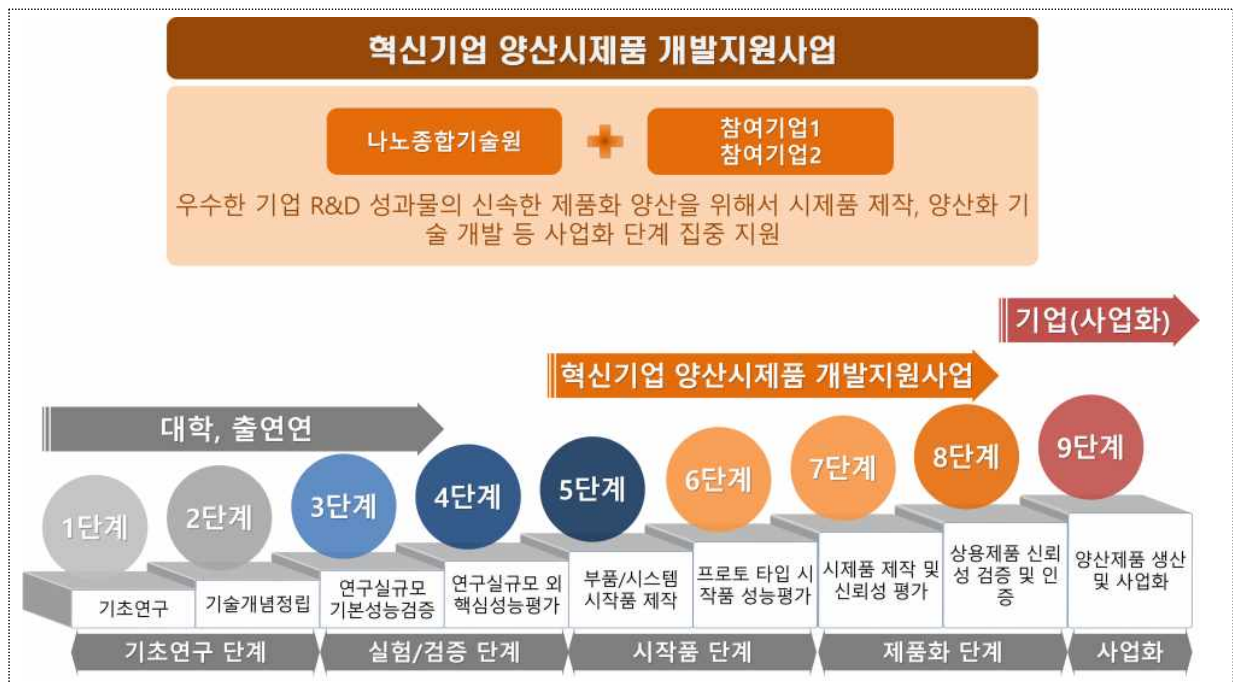
가. 내내역사업명 : 혁신기업 양산시제품 개발지원

나. 사업목적

- 나노융합기술 기업R&D 성과물에 대한 시제품 제작, 제조 및 시양산 지원 등 신속한 제품화 지원 통한 기업 성장도모

다. 지원대상 기술

- 1~2년 이내에 양산시제품 제작, 소량생산이 가능한 수준에 있는 실체성이 있는 상용화 기술(TRL 5단계 이상)
- 나노종합기술원 인프라를 활용



<혁신기업 양산시제품 개발지원사업 구성 및 TRL 요구단계>

2. 지원규모 및 내용

가. 지원규모 및 과제형식

○ (지원규모) 5개 과제 선정

- 100백만원 내외, 정부예산 확정결과 및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사업명	지원기간	정부출연금 지원금액*	선정과제 건수	참여기업 (지원 대상 기업)
혁신기업 양산시제품 개발지원	12개월 or 24개월 ('26.1월-'27.12월)	100백만원 /년 내외	5개	중소기업**및 벤처기업***

* 지원금액은 정부출연금 지원금액이며, 참여기업은 지원금액의 10% 이상 현금 매칭 필수

** 중소기업 :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(중소기업의 범위)에 해당하는 기업

*** 벤처기업 :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기업으로 벤처확인공시시스템(벤처인) 인증 기업(벤처확인공시시스템 : <https://www.smes.go.kr/venturein/pbntc/searchVntrCmp>)

○ (지원기간) 2년 = 1년 + 연차평가 후 1년 연장(1+1)

- 연차평가 결과가 “미흡” 결정 시 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과제 중단 가능

- 정부 정책에 따라 연차(1년차)평가 후 과제 종료될 수 있음

○ (과제형식) 단일과제, 나노종합기술원 연구책임자 + 참여기업

○ (총연구비) 총연구비는 정부출연금(현금)과 민간부담금(현금+현물) 으로 구성

○ (민간부담금) 정부출연금의 25%이상 부담(현금10% 이상 / 현물15% 이상)

나. 지원내용

○ 시제품 기술개발 및 양산시제품 제작 지원

3. 선정대상기술 및 신청자격

가. 선정대상기술 : 나노분야 상용화 기술 자유공모

○ 1년 ~ 2년 이내에 양산 시제품 제작 및 소량생산이 가능한 수준에 있는 실체성이 있는 상용화 기술(TRL 5단계 이상)

○ 나노종합기술원 인프라를 활용하여 시제품 제작 및 소량생산이 가능한 기술

○ 선행개발과제가 있는 경우 신청마감일 기준 종료된 과제이어야 하며 목표와 내용 등의 면에서 중복되지 않아야 함

※ 과제중복성 자체 검토 필수

- NTIS 차별성검토 결과[검색기준:기준연도 2016~2025, 기준차별성 30(유사도70)]

- 유사도 70점 이상은 선행개발과제의 사업계획서 제출 필수

나. 신청자격(과제책임자)

○ 과제책임자 : 나노종합기술원 정규직 연구원

○ 참여기업 :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

다. 참여제한 기준

- (연구책임자) 기술원 직원은 당해연도 전체 기본사업에 과제책임자로 최대 2개까지 참여 가능
- (참여기업)
 - 전체 기본사업에 참여기업으로 최대 2개까지 참여 가능
 - 동일한 내내역사업(혁신기업, 반도체 소부장 등)에 참여기업으로 최대 1개까지 참여 가능
 - 참여기업에서 기술원 기본사업으로 지원받은 개발 내용과 유사한 내용으로 연속 참여 불가(유사여부 평가위원회에서 결정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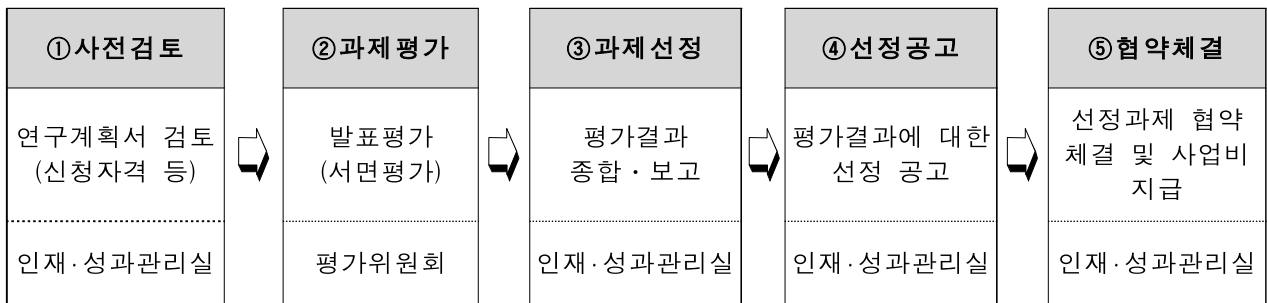
라. 참여제외

- 연구책임자, 참여기업, 참여기업 대표자, 과제담당자 등이 신청 마감일 전까지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」에 의하여 참여제한 중인 경우
- 휴업 중이거나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보고서 부채비율이 500%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인 경우

4. 평가절차

가. 평가 절차

○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서면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



※ 평가일정 등은 내부사정으로 인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 시 별도 안내

나.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항목

- (평가위원회 구성) 산·학·연 관련분야 5인 내외 구성
 -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대상과제와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평가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전문가 제외
 - ※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[별표 1]의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을 준용하여 선정
- (평가방법) 서면검토 및 발표평가

- 발표평가 시 연구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참여기업 책임자가 보완 설명 가능

○ (평가항목 및 지표)

구분	평가 내용	배점
① 기술성(40)	보유기술 수준(TRL 단계) 및 창의성	15
	기술개발 목표의 명확성	10
	기술개발 내용의 적절성	15
② 사업성(30)	개발제품의 성장가능성	10
	참여기업의 사업화 의지 및 역량	10
	사업화 추진전략의 타당성	10
③ NNFC 연계성 및 기대효과(30)	NNFC 공정/분석역량 활용도	20
	개발기술의 협력 확대 가능성	10
합 계		100

※ 선정평가계획 수립 시 일부 평가지표 및 평가 내용은 조정될 수 있음

※ 창업 5년 이내 스타트업(벤처) 기업은 특별 가산점(3점) 추가

- 사업공고 날짜를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개업일 검토

5.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

가. 공고 및 신청기간

- 2025년 10월 28일(화) ~ 2025년 11월 28일(금)

나. 제출서류

제출서류	비고
(필수) 연구개발계획서 1부(전자파일)	제공양식
(필수) 발표평가자료(15분내외, PDF) 1부(전자파일)	자율양식
(필수) 기술사업화 협력 확인서 1부	제공양식
(필수) 연구과제 신청 사전 검토의견서 1부	제공양식 / 주관기관용
(필수)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1부	제공양식
(필수) 보안서약서 1부	제공양식
(필수)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1부	제공양식

다 신청방법

- 신청방법 : 전자파일로 이메일 접수
- 제출 및 문의처 :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91 나노종합기술원
인재·성과관리실 김경민 (042-366-2026, kkm@nnfc.re.kr)

※ 접수마감 시한 내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하며,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

6. 향후 일정

- 신규과제 선정평가(예정) : 2025년 12월 8일 ~ 2025년 12월 19일(변동가능)
 - 협약체결 및 연구개시 : 2026. 1월 중
- ※ 구체적인 평가방법 및 일정은 과제 접수 후 통지 예정

7. 관련 적용 규정

-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아래 관련규정을 적용함
 - 「나노종합기술원의 규정 및 지침」
 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」
 - 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」

8. 사업 및 지재권 관리 기준

- 본 사업은 3책 5공 제외 대상사업이며, 참여연구원의 최소 인건비계상률은 5% 이상으로 함
- 연구비는 주관연구책임자의 주관 하에 나노종합기술원에서 관리 및 집행하며, 연구수행에 따라 취득되는 유형자산은 나노종합기술원에게 귀속됨. 다만 참여기업이 연구수행에 필요한 경우 소모성재료비 등은 주관책임자와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음
- 연구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등 무형적 결과물을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창출한 경우 각자 소유함. 단, 기여도 및 성과물의 성격 등에 따라 공동연구기관, 참여기업 등과 공동으로 출원할 수 있고, 공동출원의 경우 지분율에 상관없이 나노종합기술원의 [직무발명규정]을 준수하여 전담특허사무소를 통해 출원하여야 함

9. 연구비 편성 등

- 기본사업 연구비 계상기준을 준수하며, 유의사항에 주의하여 연구비 편성
- 연구비 편성 유의사항
 - (직접비) 연구시설장비비-내부장비사용료는 출연금연구비의 40% 내외 계상
 - (간접비) 연구지원비-사업단관리비는 출연금연구비의 2% 계상
 - (간접비) 성과활용지원비-지재권 출원·등록비는 특허출원 목표 1건당 3백만원 내외, 과학문화활동비는 출연금사업 홍보를 위해 1백만원 계상
- 참여기업은 정부출연금 연구비의 25% 이상을 반드시 매칭해야 하며, 현금매칭이 10% 이상이어야 함
 - 참여기업 현금 부담금은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연구과제 전용계좌 등 개설 후 현금매칭 부담금액을 입금 후 참여기업에서 집행
 - 나노종합기술원에서 계약한 회계법인에서 참여기업 부담금 편성 및 사용에 대한 세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참여기업은 이에 대하여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해야 함

구분	총연구비 (천원) (A=B+E)	정부출연금(천원) (B)	기업부담금 (천원)		
			현금 (C)	현물 (D)	합계 (E=C+D)
1차년도	125,000	100,000	10,000	15,000	25,000
2차년도	125,000	100,000	10,000	15,000	25,000

<표1> 기업부담금 예시

- 붙임
1. 연구개발계획서(양식)
 2. 기술사업화 협력 협약서(참여기업)
 3. 연구과제 신청 사전 검토의견서(주관기관)
 4.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
 5. 보안서약서
 6.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
 7. 나노종합기술원 출연금 연구사업 연구비 계상 기준